

본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에 해당하는 의무 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 제 5-1 판 -

2021. 11. 1.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 (생활 방역 세부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코로나19 확산 시 단계조정 및 방역관리 강화 등 탄력적 대응

- (기본원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 ▲ 생활공간 침입 차단 ▲ 생존 환경 제거 ▲ 몸 밖 배출 최소화
 - ▲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수칙을 알고 실천해 공동체를 보호
- (구성) 개인방역(5개 중요수칙과 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5대 중요수칙, 상황별 세부수칙, 특정 시기별 수칙) 및 방역관리자 업무(부록)으로 구성
 - (개인방역) 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중요수칙(수칙별 4~5개 행동요령)과 4가지 보조수칙(마스크, 환경소독, 고위험군, 건강생활)으로 구성
 - (집단방역)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5가지 중요수칙, 상황별 세부수칙으로 구성
 - (방역관리자 업무(부록))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방역관리자 업무(위험도 평가 및 지침마련 단계, 방역지침 실행 단계, 방역지침 준수 점검 단계), 동호회 등 소모임 방역관리자 업무(모임 전, 중, 후) 등으로 구성
- (활용) 개인과 공동체는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 등을 참고하고 필요 시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별도의 생활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 일상에서 실천

【신규 대비표】

쪽수	5판	5-1판 개정	개정사유
2p 개인방역 중요수칙	(제 4 수칙)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개정〉 (제 4 수칙)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방역본 보도참고자료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환기 지침 마련 (21.10.27)
4p 제4수칙	제 4 수칙)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습니다	〈개정〉 제 4 수칙)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개정〉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맞통풍이 가능 하도록 합니다.	
16p 식사할때		〈신설〉 접종 증명 · 음성확인제 도입 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협조하기	· 중수본- 34263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21.10.29.) 반영
24p 냉난방 기사용 할때	【일반사항】 ○ (기본 사항)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 -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하기 * 공기청정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정〉 【일반사항】 ○ (기본 사항)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 -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하기 - 기체환기 작동시에는 내부 순환모드 운전 을 지양하기 * 공기청정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 코로나19 확산병지를 위한 슬기로운환기 가이드라인 (21.10.26.) 내용 반영
	【가정에서 사용 시】 ○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최소 1일 3회(10분) 이상 환기하기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주방이나 욕실에 있는 배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완전 또는 백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켜지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켜는 기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개정〉 【가정에서 사용 시】 ○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주방이나 욕실에 있는 배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하기 ○ 화장실 출입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환풍기 팬은 상시 가동하기 ○ 주방 후드 가동 시에는 자연 환기 병행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완전 또는 백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체환기설비의 켜지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체환기설비의 켜진 기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학교에서 사용 시】 ○ 학교 시설 사용 전과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 쉬는 시간, 점심시간(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마다 환기하기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완전 또는 백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켜지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켜진 기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학교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개정〉 【학교에서 사용 시】 ○ 학교 시설 사용 전 또는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마다 수시로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하기 - 가능한 수업 중에도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되 다른 공간으로의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기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완전 또는 백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 창문은 열린 상태로 유지하고, 환풍기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체환기설비의 켜지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체환기설비의 켜진 기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학교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쪽수	5판	5-1판 개정	개정사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 시】 ○ 시설 사용 전과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실내 온도로 30분 이상 가동시켜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하기 ○ 기계환기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고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기계환기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모든 이용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타켓은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시설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개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 시】 ○ 시설 사용 전과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실내 온도로 30분 이상 가동시켜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선풍기,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하기 ○ 기계환기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기계환기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 설비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 설비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중복도 형태의 건물에서는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고, 자연 또는 기계 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기 ○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모든 이용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타켓은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시설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20p 모임·행사 할때		〈신설〉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협조하기	· 중수본－ 34263 단계적 일상화(복 전 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21.10.29.) 반영
26p 노래 할때		〈신설〉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협조하기	
31p 실내 시설 이용할때		〈신설〉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협조하기	
43p 붙임 자료	－(휴게소) 가급적 방문 자제 방문시 마 스크 착용하고 짧게 머무리기, 음식을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하기 －콜센터(1399)	〈개정〉 가을철 방역수칙 포스터 문구 변경 －(휴게소)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고 짧게 머무르고, 음식을 지정된 장소에서 섭 취 하기 －콜센터(1339)	· 방역수칙 변경사 항 반영 및 오타수 정
62p 붙임 자료		〈개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 드라인 추가	· 「방대본」 보도참고자 료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 로운 환기 지침 마련 (21.10.27)

목 차

□ 기본수칙

1.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2
2.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5
3. 집단방역 5대 중요수칙	10

□ 상황 별 세부수칙(권고사항)

1. 일할 때	14
2. 식사할 때	16
3. 이동할 때	17
4. 병·의원 갈 때	18
5. 모임·행사 할 때	20
6. 가림막 설치 할 때	23
7. 냉난방기 사용할 때	24
8. 노래할 때	27
9. 물놀이할 때	28
10. 경기 관람할 때	29
11. 야외 활동할 때	30
12. 수상 기구 탈 때	31
13. 실내 시설 이용할 때	32
14. 공연 관람 할 때	33
15. 쇼핑할 때	34

목 차

16. 여행지 방문할 때	35
17. 산행할 때	36
18. 결혼식 할 때	37

▷ **붙임 (홍보참고자료)** ◁

1. 방역수칙 포스터_슬기로운 종교생활	40
2. 방역수칙 포스터_슬기로운 모임생활	41
3. 방역수칙 포스터_슬기로운 운동생활	42
4. 방역수칙 포스터_슬기로운 쇼핑생활	43
5. 방역수칙 포스터_가을철여행편	44
6. 마스크 착용 포스터_과태료 부과 안내	45
7. 마스크 착용 포스터_착용법	46
8. 마스크 착용 포스터_마스크 착용 주의	47
9. 마스크 착용 포스터_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48
10. 마스크 카드뉴스_마스크 착용 모범 사례_차량편	49
11. 마스크 카드뉴스_변경된 지침 안내	50
12. 여름철 환기 카드뉴스_올바른 환기 방법	52
13. 방역수칙 포스터_폭염대비 코로나19 예방수칙	54
14. 방역수칙 포스터_여름휴가편	55
15. 방역수칙 포스터_여름방학편	56
16. 방역수칙 포스터_슬기로운 물놀이생활	57
17. 방역수칙 포스터_고향집방문편	58
18. 방역수칙 포스터_성묘편	59
19. 방역수칙 포스터_귀성·귀경편	60
20. 방역수칙 포스터_할로윈편	61
2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62

☐ [부 록]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서(제 3-1판)

[참고] 담당부처 연락처

구분	소관부처	연락처
▶ 총괄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59/9363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1725
▶ 사업장·회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4
▶ 민원창구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2
▶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과기정통부)	044-200-8832
▶ 국내출장 방문서비스·콜센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4
▶ 건설업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6
▶ 은행지점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1
▶ 물류센터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1
▶ 유통물류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282
▶ 전시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7
▶ 대중교통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044-201-3786
▶ 여객선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연안해운과	044-200-5718, 5738
▶ 음식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54
▶ 카페		
▶ 독서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 학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 대형유통시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381, 4382
▶ 전통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2-481-4581
▶ 중소슈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2-481-4490
▶ 결혼식 등 가족행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3
▶ 장례식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3
▶ 봉안시설		
▶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3398
▶ 종교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중무1담당관	044-203-2317
▶ 병·의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1
▶ 호텔·콘도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71
▶ 민박·숙박업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8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2881

구분	소관부처	연락처
▶ 유원시설(위터파크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3
▶ 야영장		
▶ 동물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 국립공원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3
▶ 해수욕장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4
▶ 하천·계곡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49
▶ 수상레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352
▶ 지역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56
▶ 야외 활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88
▶ 공중화장실 등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 이·미용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2881
▶ 목욕장업		
▶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20
▶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2
▶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
▶ 박물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38
▶ 야구장·축구장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 수영장		
▶ 피시(PC)방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6
▶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54
▶ 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6(7)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6
▶ 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044-200-4437
▶ 작업 훈련기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23

기본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 (제 1 수칙)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제 2 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제 3 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제 4 수칙)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제 5 수칙)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핵심 수칙 >

제 1 수칙)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①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 ②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 ③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고,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모임은 자제 합니다.

- ④ 특히,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 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제 2 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②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③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검사를 받습니다.

④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제 3 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이유)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①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④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⑤ 만나는 사람과 신체접촉(악수 혹은 포옹 등)을 하지 않습니다.

제 4 수칙)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표면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오전·오후 각 2회 이상) 환기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맞통풍이 가능 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 ②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자연환기를 병행합니다.
- ③ 냉난방기 사용 시에는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합니다.
- ④ 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⑤ 소독을 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둡니다.

제 5 수칙)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이유) 코로나19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①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 ②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가 사회적 낙인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 ③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 ④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은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 개인방역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

[1]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③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 실외에서는 ①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우선) 권장		권장	
생활 방역 상황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권장 *밀폐, 밀집, 많은 대화로 비말생성 우려가 높은 경우 보건용마스크 우선 권장			

④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⑤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상황

- ①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②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③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참조

< 개인방역 보조수칙: 환경 소독 >

①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감염성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방수성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다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서 자주 사용하는 표면을 닦고 1분 이상 유지한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1,000ml에 5%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20ml를 붓고 (예, 락스 2 뚜껑) 냉수를 생수통에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습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이 발생하여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을 실시합니다.
- 소독을 마친 후 충분히 환기시키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등)을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사용하는 장난감 등은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사용합니다.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아이들의 입과 손에 소독제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소독제 성분을 충분히 없애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을 참조하세요.

< 개인방역 보조수칙 :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30.9%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 18.7%)입니다 (2021.7.5. 0시 기준).
-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폐렴구균,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세요.

-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특히, 방문판매장, 의료기기홍보관 등)
-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3]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4]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의 방문은 자제합니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식기를 공유하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 식사 중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5] 스트레스로 힘들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합니다.
-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하세요.

< 개인방역 보조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 >

[1]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봅니다.

-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고 가능한 한 30분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 근력운동 등에 대한 동영상 보는 등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야외공간이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 활동하며, 실내공간은 자주 환기를 합니다.
- 실내에서는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외출하는 경우에는 장갑, 모자, 목도리,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따뜻한 옷을 입어 적정 체온을 유지합니다.
-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2]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수면, 식사, 휴식,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하고 담당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 정기 검진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합니다.

[3]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및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4]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확진자 및 가족: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000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신력 있는 정보를 이용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 잠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중요 수칙 메시지】

- (제 1 수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제 2 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제 3 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제 4 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제 5 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중요 수칙 >

제 1 수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 | |
|--|--|
| | 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빨라 쉽게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 발생의 예방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
| | ② 코로나19의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하여 공동체의 책임자는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 | ③ 이러한 노력은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에도 꼭 필요합니다. |

제 2 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 | |
|--|--|
| | ①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 | ②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 ③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전파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한 활동 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책임을 맡습니다. |
| | ④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제 3 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① 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② 방역지침은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중 적합한 지침을 참고하되, 아플 때 검사 받기, 손 씻기, 소독과 환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 5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주기적인 환경소독 등을 강화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
	④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구성원이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⑤ 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⑥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 4 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①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②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활동을 매일 또는 매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급적 구성원들의 일자별 증상 여부를 기록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③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출근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고위험군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로 안내합니다.
	④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제 5 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 | |
|--|---|
| | ①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 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
| | ② 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 | ③ 공동체의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공동체의 방역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평가 회의를 운영합니다. |

상황별 세부수칙(권고사항)

【권고사항】

일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 직장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퇴근하여 검사받기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 매일 발열여부 확인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에 협조하기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회의 할 때】

<공통>

- 가급적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기
- 대면회의 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대면회의를 할 때>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하기
-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는 수시로 사용하기
-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
-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회의장 등 시설이용 시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국내출장 시】

<공통>

-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곳으로 출장 자제 또는 연기
- 출장 인원, 소요 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기
- 출장자는 출장 전 스스로 체온 확인하고, 발열(37.5℃)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하기

<출장 중일 때>

-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 보기
- 출장 업무 외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기
- 출장 업무 외 다수가 밀집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기
-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장을 중단하고 검사받기

※ 출장 중 다중이용시설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 준수

【권고사항】

식사 할 때 공통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² 이상)로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좌석 배치하기
- 식사 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식사약속은 가능한 최소인원 및 시간 최소화하기
 - 식당을 방문할 경우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 및 포장·배달 활용하기
- 관련 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구내식당 이용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하고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사용 또는 비닐 장갑 사용하기
- 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및 대화자제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협조하기

※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 준수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권고사항】

이동 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대합실, 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거리 유지 및 한 칸 띄워 앉기
 - 대합실, 객실 등이 혼잡한 경우 대합실 밖, 갑판 등 열린 공간에서 대기하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하기
 - 교통수단 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 결제 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활용하기
 -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되도록 한 좌석 띄워(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 교통수단에서 냉난방기 사용 시 가급적 사람에게 직접 바람이 향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가능하면 환기를 위해 창문을 1~2cm 가량 열어두기
 - 이동 중 의심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지역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당국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별도 격리장소에서 대기하기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 코로나19 환자·자가격리자 등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외래 방문·면회 시 권고임

【외래 진료(예방접종 포함) 시】

병·의원 방문 전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병·의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기
- 병·의원 방문 전, 사전 예약하여 대기시간 최소화하기

병·의원 방문 시

- 보호자 인원은 최소화하기
- 병원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환자와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 단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한 경우 각별한 주의 필요)
 -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까지 손으로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출입 전, 진료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접수, 대기 시 사람 간 거리 2m(최소 1m) 유지하기
-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병·의원 방문 후

- 귀가 후 마스크를 벗고, 손 씻기(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또는 손 소독제 이용)

【면회 시】

- 방문 면회는 자제하고 전화, 영상통화 등의 방법 활용하기
- 불가피하게 면회 시, 면회 인원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면회를 끝내기
 - 면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 방문객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및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방문을 하지 않기
 - * 해당 의료기관의 면회에 관한 내규가 있는 경우 사전에 확인하기
 -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환자 방문 전과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환자와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하기

※ 면회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권고사항】

모임·행사 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모임 참여 자제하기
 - 모임 및 행사 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행사장 객석, 휴게 시설, 식당 이용 시 2m(최소 1m)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모임은 비대면·비접촉 모임 추진을 우선하며, 불가피하게 대면모임을 갖는 경우 밀집·밀폐도가 낮은 야외공간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진행
 - 행사 및 축제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온라인 예매하기
 - 방역관리자는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 준비 및 행사 전반 방역관리
 - 행사장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 행사장 줄서기, 셔틀이용 시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 모임·행사 참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담당자에게 알리고 귀가하기
 -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협조하기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해당 시설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 방역관리자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행사 시 권고사항】

※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행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준수

행사 전반

- 행사 시 방역을 총괄할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지자체 신고·협의 대상 모임·행사인지 확인 후 사전 조치하기
- 행사 참석자 및 행사 진행요원 등 전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보하기
-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하기
 - 참석자 중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참여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요원 교육하기
 -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진행요원 사전 보건교육 실시 등

식사 시

- (원칙) 가능하면 개별 도시락을 별도의 공간에서 이용하기, 오·만찬 자제하기, 불가피한 경우 가능한 최소 인원 참석 및 시간 최소화하기
- (준비)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좌석 배치(테이블당 인원 최소화) 또는 투명 가림막(칸막이) 설치하기
- (식사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식사 시 대화자제 하기, 불가피한 경우 대화시 마스크 착용하기

숙박 시

- 가급적 숙박은 피하는 것이 좋으나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 1인실로 예약하기, 타인의 객실에 여러 명이 모여서 모임·활동·식사·음주 등 하지 않기

종료 후

-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증상을 관찰하고 행사 참여자 중 코로나19환자 발생 시, 행사 관계자 및 전체 참여자에게 통보 요청하기

【단체취미활동 시 권고사항】

단체취미활동 시 공통

- 단체취미활동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취미활동 전 발열 등 증상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참석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단체 이동을 지양하고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하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취미활동 내에서 방역 관리자 지정하기
 - 취미활동 참석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보
 -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참여자 발생 시 모임 중단 및 대기할 수 있는 격리공간 확보
-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 취미활동 중 물 이외의 취식은 피하고, 취미활동 후에는 별도의 모임·활동·식사·음주 등 하지 않기
-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증상을 관찰하고 행사 참여자 중 코로나19환자 발생 시, 행사 관계자 및 전체 참여자에게 통보 요청하기

적용범위

- 일반식당, 뷔페, 구내식당, 카페·스터디카페 등 식탁·책상 위에 가림막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 권고

재질·형상

- 투명재질로는 유리, 아크릴, PC(폴리카보네이트), 불투명 재질로는 종이(1인 휴대용) 등으로 설치하기
- 가림막 형상은 H자형(2인용), 十자형(4인용), 고정식·이동식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설치 및 관리방법

- 가림막 높이는 가급적이면 60~80cm이상으로 설치하기
- 가림막 소독시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등)으로 표면 닦기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주의사항

- 가림막 효과를 위해 냉난방기 풍향이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일반사항】

- (기본 방향)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
-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하기
- 기계환기 가동시에는 내부 순환모드 운전을 지양하기
 - * 공기청정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가정에서 사용 시】

-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주방이나 욕실에 있는 배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하기
- 화장실 출입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환풍기 팬은 상시 가동하기
- 주방 후드 가동 시에는 자연 환기 병행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 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학교에서 사용 시】

- 학교 시설 사용 전 또는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마다 수시로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하기
 - 가능한 수업 중에도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되 다른 공간으로의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기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 창문은 열린 상태로 유지하고, 환기용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학교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 시】

- 시설 사용 전과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시켜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선풍기,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하기
- 기계환기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기계환기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 설비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 설비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중복지 형태의 건물에서는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고, 자연 또는 기계 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기
-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모든 이용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시설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권고사항】

노래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노래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노래를 부를 때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주로 한자리에서 노래만 부르고 춤추기 및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협조하기
- ※ 노래방, 유흥시설, 스탠딩 공연장 등 방문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권고사항】

물놀이(실내워터파크, 해수욕장, 계곡 등)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물놀이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 개인 차양시설은 차양 끝을 기준으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 두기 유지하기
 - 물놀이 이외 장소 탈의실,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 지속 착용하기
 - 탈의실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등), 물놀이 용품은 가능한 개인용품 사용하기
 - 가급적 선풍기 등 사용하지 않기
 -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수면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 수영장, 목욕장 등 방문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 밀집한 장소(해수욕장, 계곡 등)에 대한 ‘(해수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지자체 행정명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 음식점, 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권고사항】

경기 관람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 경기장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 경기장 내 모여서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 경기 중에는 좌석에 착석하고 발권한 좌석 외의 좌석으로 이동 자제하기
 - 운동용품, 응원도구, 운동복 및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 경기 관람장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권고사항】

야외 활동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야외 활동 시(산책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적을 경우) 2m 거리 두기가 유지되지 않아도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활동 가능
 - *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하므로 중앙 및 지자체별 인센티브 적용 여부 확인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전동차(전동카트) 탑승시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하기
- ※ 유원시설, 실외체육시설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권고사항】

수상 기구 탈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 수상레저사업장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수상 기구 이용 시 가능하면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띄어 앉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수상기구 탑승시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하기
 - 수영복, 수건 및 휴대용 수상레저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수상레저 활동 시 다른 사람과 가급적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 수상기구 이용 시 사업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
 - 수상레저사업장(기구)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가급적 자제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샤워실 등에서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권고사항】

실내 시설 이용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 실내 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수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좌석 한 칸 띄어 앉고 대기·이동 시에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운동기구, 컴퓨터 등 공용물품을 이용하기 전 표면을 소독하거나 일회용 커버를 사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 식당 이외의 실내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말하기, 구호 외치기 등) 자제 하기
 -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협조하기
- ※ 실내 시설(피시방, 관공서 등)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권고사항】

공연 관람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 밀폐 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밀폐된 장소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상영관, 공연장 등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 상영관 및 공연장 등 밀폐 시설 내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 관람(상영) 예매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기
 -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 영화관, 공연장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권고사항】

쇼핑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 실내 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쇼핑몰 내 휴게 공간에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대기·이동 시에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말하기, 구호 외치기 등) 자제하기

※ 백화점, 대형마트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권고사항】

여행지 방문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여행 자제하기
 - 가족단위·소규모로 여행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가급적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필요한 음식물 간식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되도록 휴게소 들리지 않기
 -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 여행지 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 ※ 유원시설 등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권고사항】

산행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산행 자제하기
- 가족단위·소규모로 산행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산행하는 것은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 실외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산행 시 2m 거리 두기가 유지되지 않아도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활동 가능
 - *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하므로 중앙 및 지자체별 인센티브 적용 여부 확인
- 산행 중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가능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휴식하기
- 산행 중 음식 섭취는 개별적으로 하고 음식 나눔 등 자제하며, 음식 섭취 중 대화를 자제, 섭취 전·후 마스크 착용
- 산행 시 손 소독제를 휴대하여 수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가급적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산행하기
- 산행 중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
-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긴소매·긴바지 착용 권고
 -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 유원시설 등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을 준수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단체 산행 시 권고사항】

불가피하게 단체 산행을 할 경우

- 단체모임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취소하기
- 혼잡한 주말·휴일 보다는 혼잡하지 않은 평일 이용하여 산행하고 일정은 최소화하기
- 감염우려가 큰 대형버스 보다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하기
- 대규모 식당 등을 이용한 단체 식사를 자제하고 식당 방문 시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 활용하며 식사 전·후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산행 및 야외 활동 후 추가 모임을 지양하고,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 방문 자제하기
- 귀가 후 옷 세탁 및 목욕·샤워하기
-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하고 코로나19 확진 시 방역관리자에게 통보하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권고사항】

결혼식 할 때 공통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참석 자제하기
 - 결혼식장 출입 시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결혼식장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 * 신랑, 신부 및 혼주는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식당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여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냉난방기 사용 등으로 상시 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하기(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조치 권고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가급적 결혼식 후에 식사 등 후속 모임 없이 해산하기
 - 식당 이용 시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사용 또는 비닐 장갑 사용하기
 - 식사 시 대화를 자제하고 음식 섭취 전·후 마스크 착용하기
- ※ 결혼식장 관련하여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우선하여 준수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 관련 시설의 방역관리지는 본서의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

홍보 참고 자료

발행일 : 2020. 8. 3.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극복#모두함께이겨내요

슬기로운 종교생활



이건 위험해요!

- ✗ 마스크 쓰지 않고, 가까이 모여 앉아 종교 활동(예배·미사·법회 등) 참여
-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큰 소리로 대화와 노래, 책 등 공용 사용
- ✗ 종교 활동 전후 악수 등 신체접촉, 소모임·식사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 잊지 말고 마스크 쓰기,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참여하기
- ✔ 노래는 마스크 쓰고 작게,
가급적 반주로 대신, 책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다수가 모이는 종교 활동 전후에는 환기
- ✔ 악수보다는 목례, 소모임·식은 자제하기



⚠ 다음의 사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감염이 취약한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학교, 학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
(기숙사 거주자,
군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등)



**불특정 다수와
대면하는 사람**
(서비스업
종사자 등)

발행일 : 2020. 8. 3.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극복#모두함께이겨내요

슬기로운 모임생활



이건 위험해요!

-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모임·행사
※ 마스크 쓰지 않고 설명·판촉·노래하는 모임은 더욱 위험!!
- ❌ 여러 사람이 자주 모여서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모임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 모임은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하기
- ✔ 대면모임 때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모임시간은 최소화 하기
※ 모임은 소규모로, 환기가 잘 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식사는 자제



⚠️ 다음의 사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감염이 취약한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학교, 학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
[기숙사 거주자,
군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등]



**불특정 다수와
대면하는 사람**
[서비스업
종사자 등]

발행일 : 2020. 8. 3.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극복#모두함께이겨내요

슬기로운 운동생활



이건 위험해요!

-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
- ⊗ 표면소독하지 않은 운동기구를 공용으로 사용
 - ※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 힘든 격렬한 단체 운동은 위험!!
 - ※ 단체 운동 후 다함께 모여서 뒤풀이는 더욱 위험!!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 운동할 땐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에서 조깅, 산책하기
- ✔ 실내체육시설 이용할 땐 방역 수칙*에 더욱 유의하기
 - *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공용 운동기구는 사용 후 매번 소독



⚠ 다음의 사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감염이 취약한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학교, 학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
[기숙사 거주자,
군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등]



**불특정 다수와
대면하는 사람**
[서비스업
종사자 등]

발행일 : 2020. 8. 3.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극복#모두함께이겨내요

슬기로운 쇼핑생활



이건 위험해요!

-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대화하며 쇼핑
※ 방문판매 행사장 등 볼특정 다수가 여러 번 방문하여 물건사기는 더욱 위험!!
- ❌ 노래·시식행사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쇼핑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 쇼핑은 환기가 잘 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쇼핑 시간은 짧게
※ 온라인 쇼핑 적극 활용
- ✔ 마스크 쓰기 잊지 말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 다음의 사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감염이 취약한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학교, 학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
[기숙사 거주자,
군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등]



**볼특정 다수와
대면하는 사람**
[서비스업
종사자 등]



가을 여유는 가족과 집 근처에서 즐기세요!

모임 등 단체 활동을 자제하고, 가족단위로 활동하세요

✓ 계획할 때

- 발열 및 호흡기증상 등이 있다면 여행은 취소하기
- 한적한 야외장소로 일정은 짧게 여행하기

✓ 이동할 때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 ① (역사·터미널) ▲온라인예매, 모바일 체크인 등 활용 ▲음식섭취는 지정된 장소 이용
- ② (차량 내부)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손위생 준수 ▲노래·음주·대화 및 음식 섭취 자제, 자주 환기
* 불가피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작은 목소리로
- ③ (휴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고 짧게 머무르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하기

✓ 산행 및 야외활동을 할 때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휴식
- 합성, 노래 등 침방울이 될 수 있는 행위 자제하기
- 산행·야외활동 후 밀폐·밀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 방문 자제하기

✓ 식사를 할 때

- 대규모 식당 등을 이용한 단체 식사 자제하기
- 혼잡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 활용 및 이동 시·식사 후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음식 섭취 시 거리 유지, 손 위생, 대화 자제, 개인접시에 덜어먹기(나눔 자제)

✓ 귀가 후

- 발열 및 호흡기증상 관찰하고 외출·모임 자제하기
* 귀가 후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 안내

※ 불가피한 단체모임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모임의 인솔자, 가이드, 버스기사 등)하여 아래 수칙 준수

방역관리자가 할 일

- 명단 확보
- 방역수칙 사전 숙지 및 준수 관리
- 한적한 야외장소로 일정은 짧게 계획(반일, 당일 등)
- 발열 및 호흡기증상 사전확인 및 유증상 시 집에서 쉬도록 안내
- 침방울이 될 수 있는 합성, 노래, 큰소리로 대화 등 자제 유도
- 차량에서 음식 제공 및 섭취 자제 지도·관리
- 모임원이 코로나19 확진 시 다른 모임원에게 안내

2021.10.08.



2020.11.14.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필수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위반당사자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 ✓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금)부터 시행 됩니다!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 ncov.mohw.go.kr

마스크 착용!

나와 가족을 위한 '한 장'의 위력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 수술용 마스크
-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마스크 착용!

서로를 지키는 첫 걸음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호흡기 질환 등)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2020. 07. 17

질병관리본부
KCDC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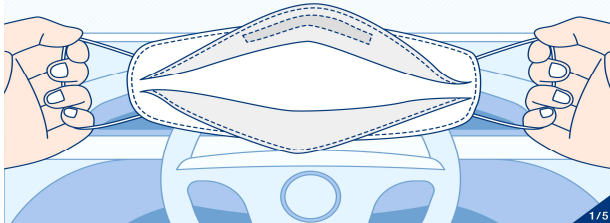
2020.11.18.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시대를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

마스크 착용! 잊지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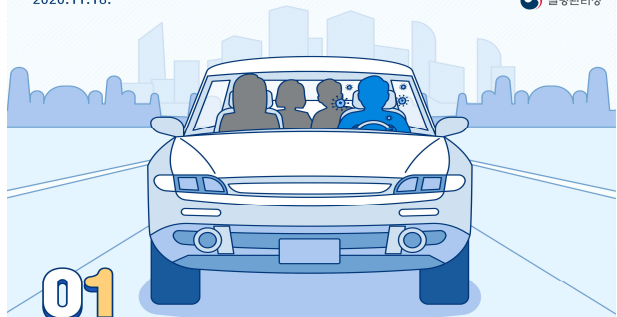
마스크 착용 모범사례 차량 편



1/5

2020.11.18.

질병관리청



01

포스트 코로나 시대, With 코로나

우리의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
특히 여럿이 탑승한 차량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데요!
확진자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승하게 되어도 그 효과는 유효할까요?

2/5

2020.11.18.

질병관리청



02

좁은 공간에서 확진자와 1시간 이상 동승하다!

확진자 A씨와 승용차 안(좁은 공간)에 동승하여
1시간 이상 이동한 B, C, D씨!
B, C, D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위험천만한 시간!

3/5

2020.11.18.

질병관리청



03

마스크 한 장의 힘

하지만 모두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한 채로 이동하였고,
확진자 A와 함께 동승한 3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스크 한 장의 힘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

4/5

2020.11.18.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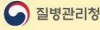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마스크!

차량과 같은 밀폐·밀접한 공간에 있을 때
항상 마스크 착용하여 나와 동승자를 보호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모범사례는 계속됩니다!



5/5

2021.7.1. 

**“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



1/10

2021.7.1.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해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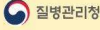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 자자체에서 별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지정

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입니다.



2/10

2021.7.1.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밀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 돼요!

예방접종력 및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집회·공연**

거리 집회, 전시회, 연주회, 박람회, 지역축제 등

3/10

2021.7.1.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밀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 돼요!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실외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실외 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관람 시

실외 소풍 공간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4/10

2021.7.1.

질병관리청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권 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5/10

2021.7.1.

질병관리청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장소(예시)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 공원

6/10

2021.7.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 착용 권고**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예)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예)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예)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	✓	
실외 집회·공연 (예)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	✓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레저활동		✓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대상 시설 모두를 포함함

**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공원)

7/10

2021.7.1.

질병관리청

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 활동 시 예방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8/10

2021.7.1.

질병관리청

자주 묻는 질문

Q 야외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실외라 하더라도, 행사에 해당되며,
동시에 결혼식장과 관련한 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되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랑신부 및 양가부모님은 결혼식 중 마스크 착용 예외

Q 계곡 물놀이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계곡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계곡의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하였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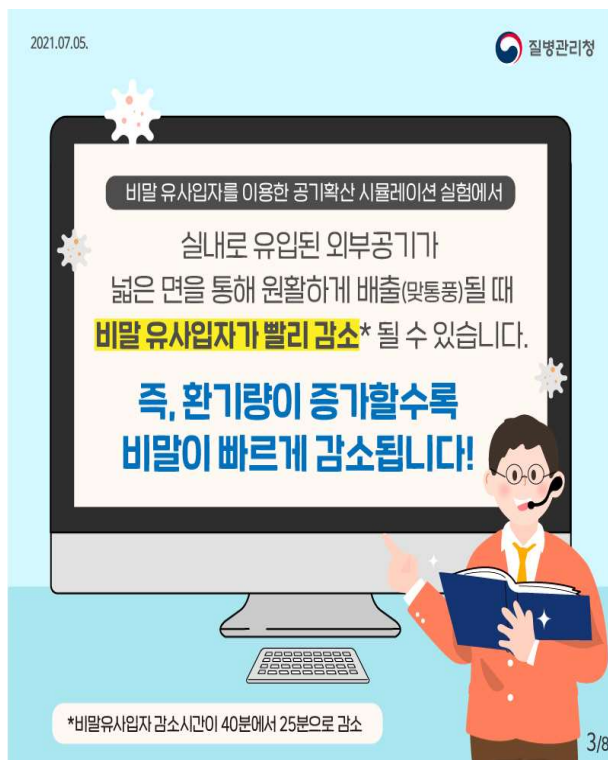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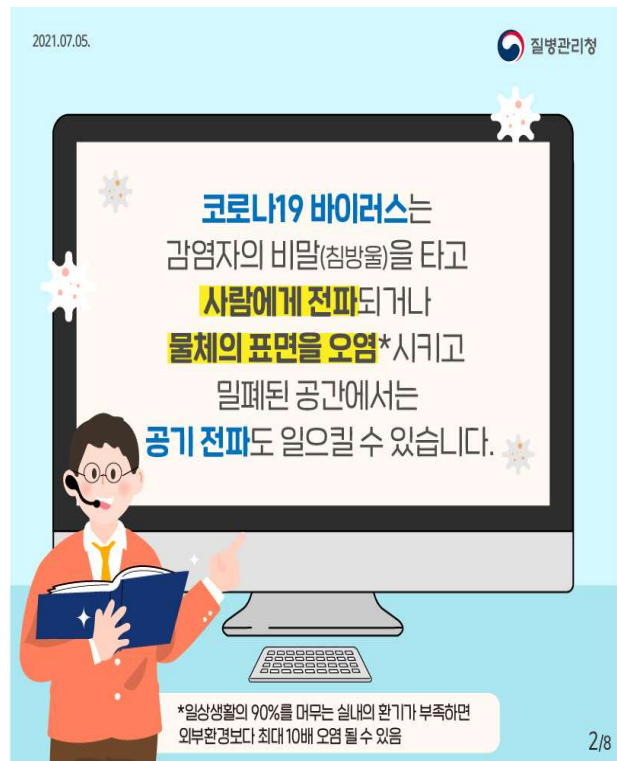
9/10

2021.7.1.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10/10



기본 환기 3원칙!



1일 최소 3회(10분) 이상 창문 열어환기 하기

*밀집도가 높은 공간이라면 더 자주 환기를 해주세요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 동시에 여러 개 열기

*맞통풍을 유도해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게 하고 창문을 넓게 열기 어려울 경우 지속적인 환기를 시킵니다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 하기

*냉방 중에 환기하지 않으면 비말이 재순환 되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5/8

하절기에어컨 가동 시 3원칙!



에어컨 가동 시 최소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환기하기

*밀집도가 높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더 잦은 환기 필요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 천장 또는 벽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하기



대중교통, 공동이용 승합차 운영 시 창문을 지속적으로 조금 열어두기

*차량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

6/8

창문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환기는 여러 개의 창문을 열어 맞통풍 시키는 것이 좋지만 창문이 없는 지하 등에서는 다음을 지켜주세요!

- ✓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강의, 노래 등)을 자제합니다
- ✓ 머무는 동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 방문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합니다
- ✓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주방 후드나 욕실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합니다

이 때, 선풍기를 활용하여 정체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여 환기를 촉진합니다

7/8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자에 대한
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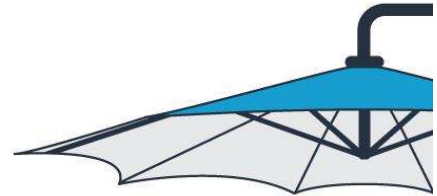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방법을 기억하세요!

기본 환기 3원칙
에어컨 가동 시 3원칙

*노출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 감염위험이 2.2배 증가하고 6시간으로 늘어나면 3.4배 증가합니다.

8/8

무더운 여름, 코로나19 예방 이렇게 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시 충분한 휴식과 함께

- ☑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신체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합니다.
- 마스크를 벗고 휴식 시 다른 사람과 간격을
2m 이상(최소 1m) 충분히 확보
-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 충분한 환기와 함께

- ☑ 실내에 침방울 입자의 농축·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합니다.
-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개방해야
맞통풍할 때 환기가 더욱 효과적
- ☑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을 직접 향하지 않게 조정하고
바람세기를 약하게 설정합니다.





질병관리본부
KCDC



질병관리본부
www.kdca.go.kr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

코로나19로 달라진 휴가,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식하자

꼭 지켜주3 수칙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휴게소, 식당·카페 등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으로 머무르기

* 식당·카페에서는 음식물 섭취 시 외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시 대화 자제

* 휴게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시 외에는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사람간 거리는 2m(최소1m) 이상 유지하기

△ 꼭 피해주3 수칙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가지 않기(집에 머무르기)

*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유흥시설 등 밀폐·밀접된 장소, 혼잡한 여행지, 시간대는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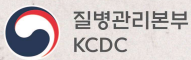
* 해수욕장 이용시 '해수욕장 신호등' 활용하여 혼잡도 확인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발행일 : 2020.07.24



•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



🔊 꼭 지켜주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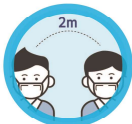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원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하기

*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기,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



자주 손 씻기

(손 소독제 이용 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사람 간 거리는 2m(최소1m) 이상 유지하기

⚠️ 꼭 피해주3 ⚠️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려주세요 (학생 → 담당교사, 교직원 → 복무담당자)

- 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②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③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 ④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3밀)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행일 : 2020. 8. 3.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극복#모두함께이겨내요

슬기로운 물놀이생활



이건 위험해요!

- ❌ 밀집된 공간에서 다함께 물놀이, 공용 물놀이 기구 이용
- ❌ 물놀이 후 탈의실·샤워실에서 큰 소리로 대화, 음식 나눠먹기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해변에서 물놀이, 해수욕하기
 - ※ 파란줄(차양)은 2m 거리 두고 설치, 사람 많은 해수욕장은 방문 자제
 - ※ 물놀이 기구(수경, 튜브 등)는 개인용품 사용
- ✔ 탈의실·샤워실 이용 시
 - 대화자제, 거리 두기, 머무는 시간 최소화 하기
 - ※ 탈의, 샤워는 가급적 숙소 이용



⚠️ 다음의 사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감염이 취약한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학교, 학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
(기숙사 거주자, 군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등)



블특정 다수와 대면하는 사람
(서비스업 종사자 등)

2020.9.25.

질병관리청



마음으로 함께하는 추석,
다음에 만나길 꼭 약속해요



Hoxy 고향집 방문할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실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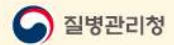
- ✓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하기
-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히 하기
- ✓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 각 지역에서 모인 가족이 밀접하게 지내므로 가족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 ✓ 직계가족만 만날 것 권고
- ✓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 ✓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 ✓ 하루에 2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 ✓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주의사항

- ✓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하지 않기
- ✓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 ✓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 주의
- ✓ 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동 자제하기

귀경·귀가 후에는 집에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해주세요!

2020.9.25.



Hoxy 성묘·봉안시설 방문할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실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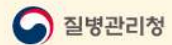
- ✓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 ✓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 봉안시설의 안치실에서는 20분 이상 머물지 않기
- ✓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주의사항

- ✓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 ✓ 명절 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 ✓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귀경·귀가 후에는 집에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해주세요!

2020.9.25.



마음으로 함께하는 추석,
다음에 만나길 꼭 약속해요



Hoxy 귀성·귀경할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경우,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악화시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 ✓ 휴게소 실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하기
- ✓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 ✓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 좌석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 대화 자제하기
- ✓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하고,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 자제하기
- ✓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기차·버스 등 안에서

- ✓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 음식 섭취하지 않기
- ✓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하기



귀경·귀가 후에는 집에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해주세요!



2020.10.23.

할로윈 안전하게 보내려면 방역수칙과 함께!

공통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행사, 모임 참석하지 않기
- 행사, 파티룸 모임 등 단체 모임 참석 자제 및 비대면·비접촉 모임 적극 활용하기
* 불가피한 대면모임은, 소규모(10명 이내)로 계획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밀폐·밀집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특히 혼잡한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기
*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짧은 시간 머무르고,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 의상(코스튬) 등은 대여보다 개인용품 사용하기
- 방역수칙 사전에 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기

모임 중

- 실내(특히 식음료 섭취 전·후) 및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의상(코스튬)의 일부로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마스크 위에 가면 등 착용하지 않기)
- 실내·외(특히 이동·대기 시)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모임 중 신체 접촉,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큰소리치기, 노래 부르기, 응원 등) 하지 않기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및 발열·호흡기 증상 관찰하기
- 술잔, 식기류 등은 개별로 사용하고, 음식은 나눠먹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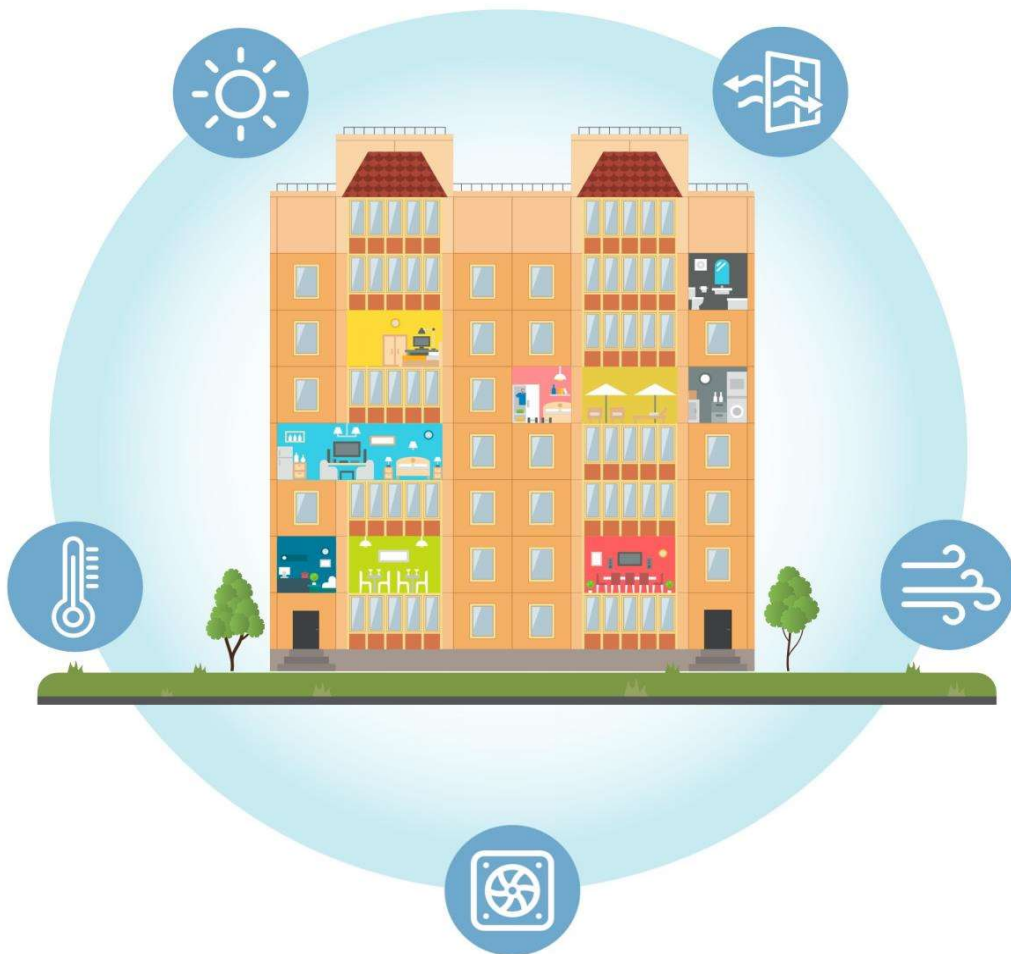
모임 후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하기

※ 불가피한 단체모임에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 ☑ 방역 수칙 숙지 및 준수 관리
- ☑ 모임원이 코로나19 확진 시, 다른 모임원에게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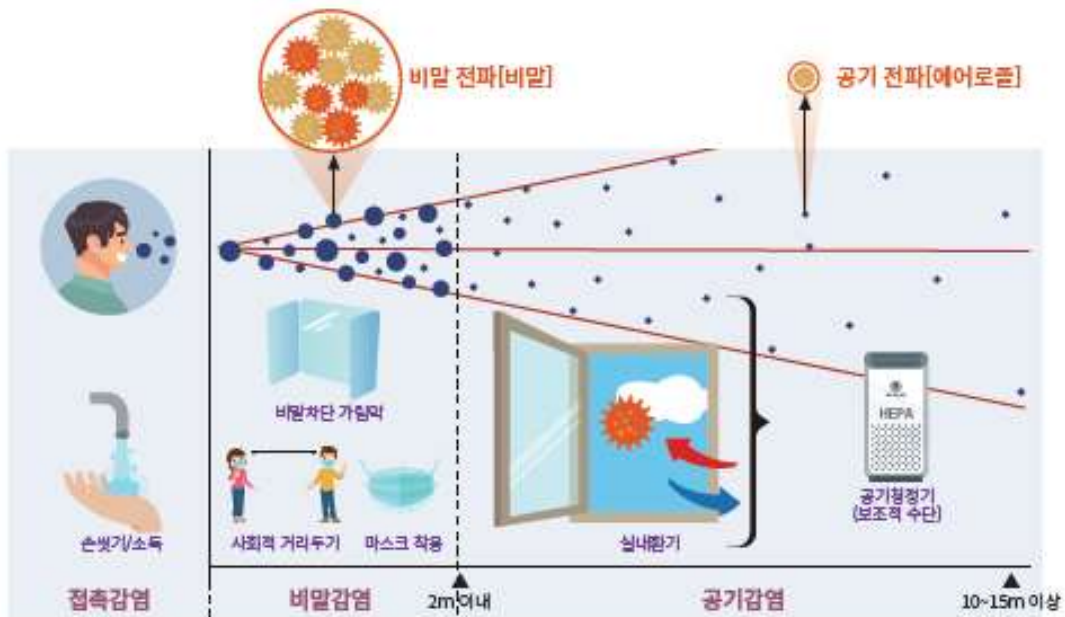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입자 확산특성과 예방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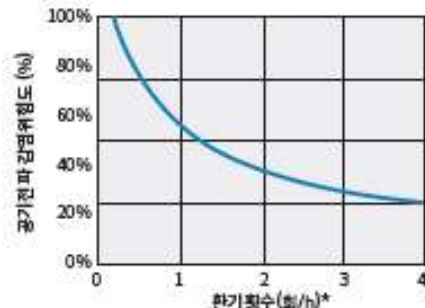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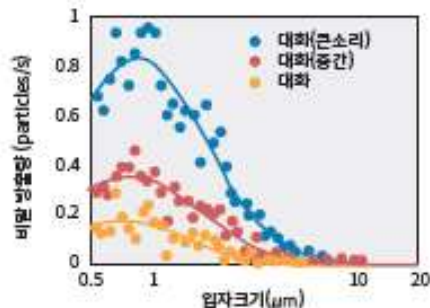
| 비말입자 크기별 특성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시간 |

- $5\mu\text{m}$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침강하나, $5\mu\text{m}$ 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중 장시간 부유하여 10m 이상 확산가능
- 코로나19는 공기중 3시간, 스테인레스에서 2일간 생존가능(출처: NEJM, 2020)
 - 접촉 및 비말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이 유효한 수단
 - 건물내 집단감염 및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 수단



| 활동량에 따른 비말방출량 및 환기에 의한 공기전파 감염위험도 변화 |

- 활동량에 따라 호흡량(바이러스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체육시설 및 카페 등과 같이 호흡량이 많은 시설은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높음
- 환기량*(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이 커질수록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낮아지며, 10분 내외의 자연환기시 (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3회 환기횟수 확보)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 감염위험도 1/3로 감소



*환기량은 외부공기가 실내에 유입·유출되는 양으로, 환기횟수 1회/시간은 1시간에 실내체적 만큼 유입·유출되는 환기량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숨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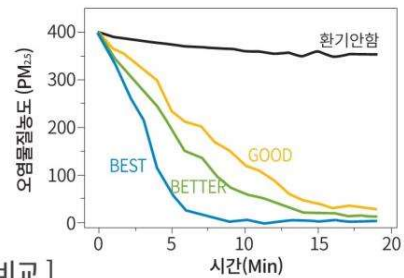
2

|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 개방 및 냉난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

-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맞통풍을 고려하여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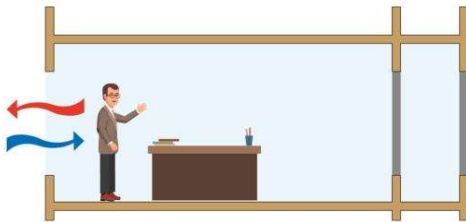


[자연환기 방식별 환기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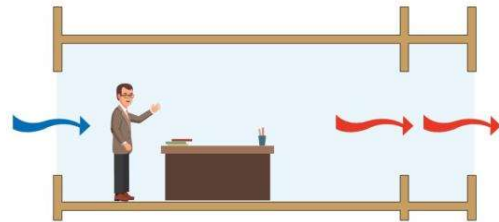


| 중복지 형태의 건물(학원 등)에서는 유해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항상 닫은조건을 유지하고, 자연환기는 동시에 실시!

- 출입문 상시 개방시 다른 공간으로 유해물질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되, 자연환기시 모든 실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



[학원 수업중 자연환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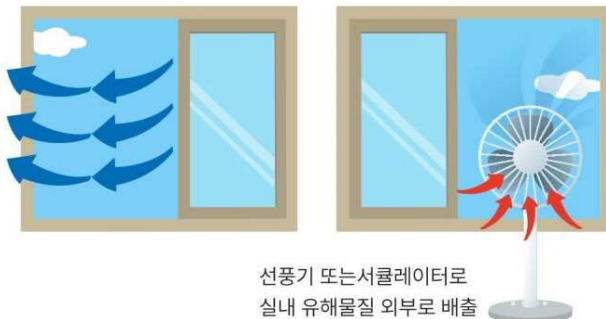
[학원 쉬는시간 자연환기 방법]

| 환기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선풍기 등을 활용한 환기량 증대방법 |



선풍기 또는서큘레이터로
실내 유해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이 1개인 경우 환기방법]



선풍기 또는서큘레이터로
실내 유해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이 2개인 경우 환기방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건물 유형별 환기가이드라인

3

| 코로나19 대응 환기가이드라인 일반원칙 |

-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활용하여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등 실내유해물질 제거
 -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고, 선풍기 및 환기설비 등으로 환기량 극대화
 - 공기청정기 활용시 유해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도움



| 건물 유형별 코로나19 대응 환기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 환기설비 외기도입량을 최대한 하고(내부순환모드 지양),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자연환기를 수시로 시행
- 건물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가동 및 위생배관 점검

건축물 및 환기설비 유형	환기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사무소, 쇼핑몰, 병원 등]	 환기시스템 가동 확인	 외기도입 극대화	 사용전 유해물질 배출	 내부순환 금지	 화장실팬 상시 가동
 [소규모 점포]	 자연 환기(수시)	 환기시스템 가동	 화장실팬 상시 가동	 위생배관 봉수 확인	
 [다중이용시설]	 자연 환기(상시)	 기계설비활용 환기량 증대	 환기시스템 가동	 화장실팬 상시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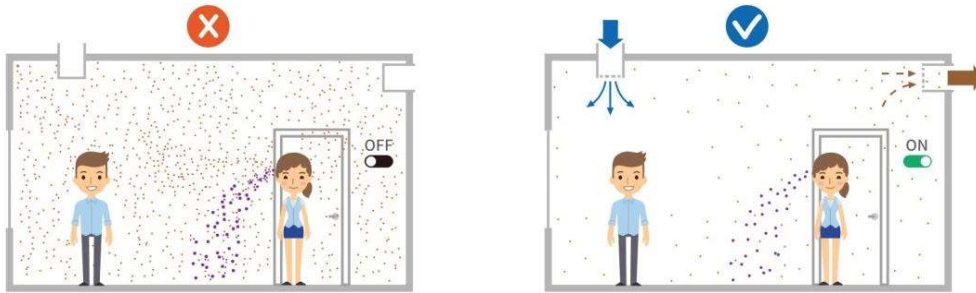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

4

| (내부순환모드 지양)외기도입량 100% 및 전배기 방식의 기계환기 상시가동 권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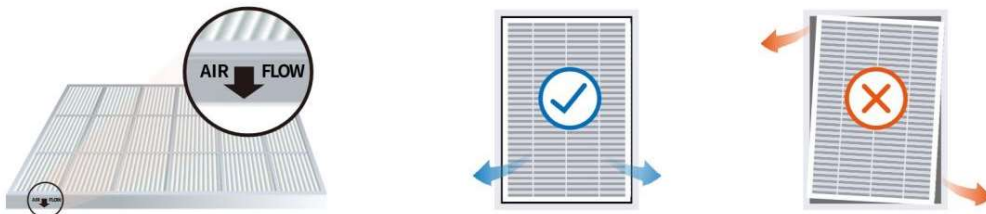
- 재실시간이 길고,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 카페, 콜센터 등에서는 환기설비를 상시 가동하여,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 내부순환모드 지양(환기설비 외기도입량 최대화)

구분	내부순환모드	혼합모드	전외기 급기 / 전배기 모드
시스템 구성도			
취출구농도 측정사례			

- 고성능필터를 사용하고, 필터와 카트리지가 사이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에 유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습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방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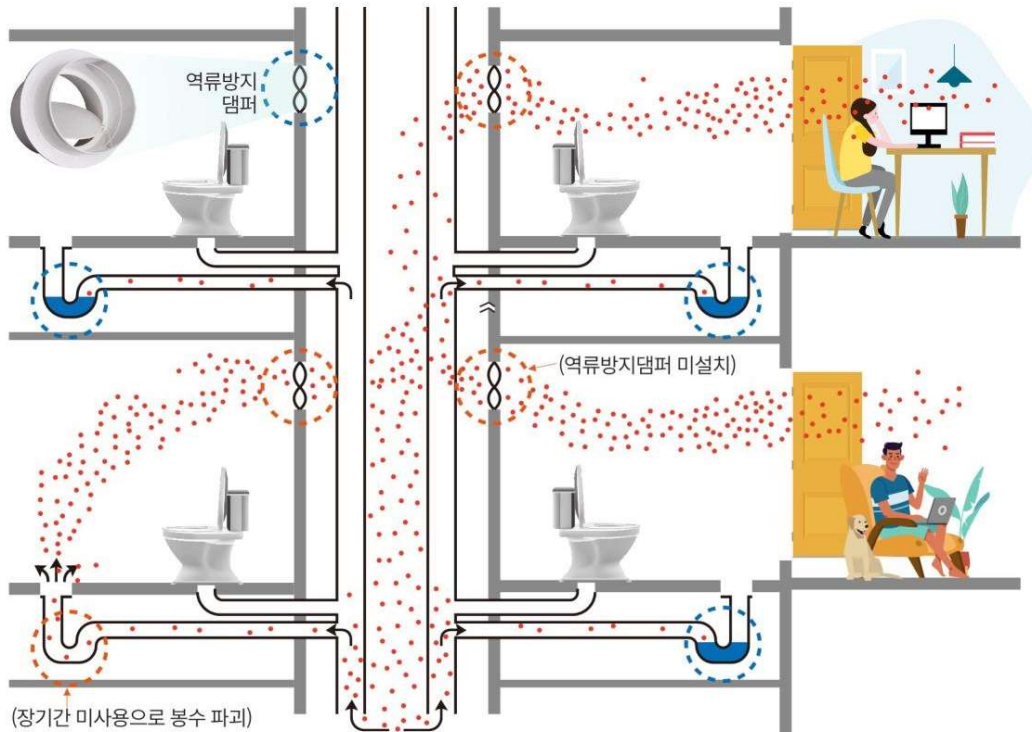
| 실내공간에서 음압형성시 화장실 배관, 환기구로 유해물질 유입가능 |

- 연돌현상이나 조리 중 레인지후드 가동 등으로 실내공간에 음압이 형성되어 오염물질 유입가능
-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팬 설치 및 레인지후드 가동시 자연환기 병행



|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 층간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설비점검 |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배기팬은 역류방지댐퍼가 있는 제품 설치
- 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배기팬은 상시 가동
- 화장실 설비배관내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설 점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파
라

동 지침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집단방역 수칙과 관련하여 다중이용 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의 방역관리자가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실시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소모임) 등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제3-1판)

2021. 11.



충청방역대책본부

【신규 대비표】

쪽수	3판	3-1판 개정	개정사유																
2p 개요	〈표 1〉 다중이용시설 대상시설(35종) (2021.8 기준) <table><tr><th>구분</th><th>시설명</th></tr><tr><td>1그룹(3종)</td><td>▲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편·홀덤편게임장</td></tr><tr><td>2그룹(5종)</td><td>▲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td></tr><tr><td>3그룹(11종)</td><td>▲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td></tr><tr><td>기타시설(14종)</td><td>▲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아·미용업 ▲종교시설</td></tr><tr><td>고위험사업장</td><td>▲콜센터 ▲물류센터</td></tr></table>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편·홀덤편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아·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개정〉 〈표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2021.11 기준) <table><tr><th>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th></tr><tr><td>▲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td></tr><tr><th>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th></tr><tr><td>▲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아·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td></tr></table> ※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변동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아·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중수본- 34263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21.10.29.) 반영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편·홀덤편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아·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아·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6p 이용자 관리		〈신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5종)은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18세 이하 이용 금지 -접종완료자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쪽수	3판	3-1판 개정	개정사유
31p 예방접 종이력 확인방 법	붙임 3 예방접종이력 확인방법 ○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소 업무담당자 및 자택으로 이동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전자증명서(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1. 전자증명서(COOV):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발급 :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 (iOS) 에서 'COOV' 검색-설치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 (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2.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한 확인 ※ 발급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방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kdca.go.kr), 정부24 (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7.1~) 3. 예방접종스티커 ※ 발급 :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시스템을 통해 접종증빙정보기 담긴 스티커 출력→신분증에 부착(7.1~)	붙임 3 예방접종이력 확인방법 ○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소 업무담당자 및 자택으로 이동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전자증명서(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예방접종인료자 외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 방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참고 ① 전자 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플랫폼)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QR 스캔 또는 육안 확인 - (QR 스캔)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스캔으로 유효한 집중증명 확인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 KT, LG) - (육안확인)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집중증명 정보를 육안으로 점검하여 유효한 집중 증명서임을 확인 * 전자 증명서내에서 "검증완료", "14일경과" 등 주요 내용 확인 필요 <전자 증명서(COOV) 예시> ②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집중 유효기간 육안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증명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집중 유효기간 : 예방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0.1. 1000에 접종한 경우, '21.10.16. 0시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준용 ③ 예방접종 스티커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집중 유효기간 육안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스티커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앞면의 신분증 일치 여부 - 집중 유효기간 : 예방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예방접종 스티커 예시>	· 방대본— 22745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증명 음성확인제 지 침(21.10.29.) 반영

I. 개 요

1. 목적 및 기본원칙	1
2.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1

II. 다중이용시설 · 사업장 방역관리자 업무

1. 위험도 평가 및 지침마련 단계	3
2. 방역지침 실행 단계	4
3. 방역지침 준수 점검 단계	7

III. 동호회 등 소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1. 모임 전	8
2. 모임 중	8
3. 모임 후	9

IV. 방역관리자 사이버교육 안내 10

▷ 서 식 ◁

1.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예시)	12
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예시)	13
3.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위험도 자가점검표(예시)	15
4.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예시)	16
5. 사업장 방역 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17
6. 소독 실시 대장 양식(예시)	19
7. 환기 실시 대장 양식(예시)	20
8. 직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21
9. 사업장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22
10. 수기출입명부 기록양식(예시)	23
11.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 방역 점검표(예시)	24
12. 활동 별 방역관리자 방역 점검표(예시)_여행, 모임 등	25

▷ 붙 임 ◁

1. 자주 묻는 질문 (FAQ)	27
2.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소독하는 방법(환자발생시)	30
3. 예방접종이력 확인방법	31
4. 개인안심번호 확인방법 포스터	33
5. 방역관리자 방역수칙 포스터	34

1 목적 및 기본원칙

- 사업장,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동호회(소모임)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류, 실내체육시설 등)

※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사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
- 시설·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시설, 인적측면)하고, 시설·사업장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실천이행 후 점검 실시

* 동호회 등 소모임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모임 전, 중, 후의 역할 수행

2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무)·시설 등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전담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

* 규모가 큰 경우, 업체 내 부서별, 사업장별로 지정 가능

□ (주요 역할)

- ① 관련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장·시설의 밀폐도,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사업장·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 <서식 3>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참조

- ②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직원·이용자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 ③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 ④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 제시

등 참고하여 사업장·시설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

* 사업장·시설 책임자가 방역관리자인 경우, 책임자가 개선방안 마련·실행

⑤ 해당시설에서 유증상자* 발생시, 지체 없이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안내,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방안 마련 및 지역보건소 담당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표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2021.11 기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 식당·카페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실외체육시설 ▲ 숙박시설 ▲ 파티룸 ▲ 도서관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박람회 ▲ 마사지업소·안마소 ▲ 이·미용업 ▲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종교시설

※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변동 가능

1 위험도 평가 및 지침마련 단계

- 방역관리자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 준비
 - (시설) 지상 또는 지하 등 시설의 위치, 창문과 출입구를 통한 환기(맞통풍) 가능 여부, 책상 또는 테이블 등의 간격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배치 등
 - (이용자) 이용자 1인당 평균 체류시간, 이용자의 규모 등
 - (직원) 직원의 수, 업무 추진방식,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 방역관리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사업장의 위험도 평가 실시
- 식당, 영화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의 방역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서식 1>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방역관리를 정도를 평가하는 <서식 3>, <서식 4> 활용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 <서식 1>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서식 3>,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서식 4>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

□ 방역관리자 지침 마련 단계

- ① 위험도 평가 후,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높은 항목은 <서식 2>, <서식 5>를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자 지침을 마련
 - * <서식 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서식 5>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 ② (시설) 소독 방법 및 주기, 환기방법 및 주기, 물품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 등
 - ③ (이용자) 이용자 입장시 확인할 사항(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객 밀집도, 거리두기 가능여부 등),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강구(테이블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비대면 주문·접수), 안내게시물 부착 등
 - ④ (직원) 코로나19 유증상직원의 출퇴근 관리,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준수, 소독제 비치 등 직원 보호, 코로나19 예방교육 등
- ※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2m(최소 1m)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착용 또는 투명격벽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 지침강화 필요

1. 시설 관리

□ 청소 및 소독

-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 **1주일에 1회 이상 사업장 내 표면전체를 소독**
 - 준비된 소독제를 천(헝겂 등)에 적신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출입구 손잡이, 탁자, 공용pc,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시간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
 - * 접촉이 빈번한 공용사용 물품의 표면은 더 자주 소독 필요
 -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 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접촉식 장치(스위치 등)는 비접촉식 장치로 변경
- 소독 시,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방수장갑, 앞치마, 장화 등 착용, 소독 후, 소독한 날짜, 범위 등 소독일지*를 작성
 - * <서식 6> 소독 실시 대장 양식 예시

2) 환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3회 이상) 실시
 - * <서식 7> 환기 실시 대장 양식 예시

3) 물품 및 자원 관리

- 사업장·영업장 소독·위생 관련 물품 확인 및 준비
 -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등
- 출입구나 화장실 등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4) 안내문 부착

-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 부착
 - *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의 흡연실,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 실시

- 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공용 공간 이용시 마스크 착용,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주기적 환기 및 표면소독 등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공용시설 집중관리 내용>

▶ 흡연실(흡연부스)

- 흡연장소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표시(스티커, 페인트 등을 이용해 거리 표시 등)
-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부스는 1인씩 이용하는 등 흡연자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게시) 및 관리

▶ 구내식당

- 시차 분산 운영
- 배식·퇴식시 사람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유지 (스티커 등으로 간격표시)
- 좌석은 한칸 띄어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 식사(투명칸막이 설치 등)하고, 대화는 자제하도록 관리

▶ 탈의실·샤워실

-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이용가능하도록 관리(샤워실, 락커 등 한 칸 띄기),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토록 관리
- 락커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소독(일 1회이상) 및 주기적 환기(일 3회이상)

▶ 휴게실

-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고,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거리유지 가능하도록 테이블 배치 조정 등), 휴게실 이용시 마스크 착용
- 손이 자주 닿는 탁자, 의자, 정수기 표면 등은 소독(일 1회), 주기적 환기(일 3회이상)
- 개인컵, 개인수저 등 사용안내, 공동물품 이용은 자제하고 사용시 소독철저

▶ 통근차량

- 이용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자제 안내
-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좌석 등받이 등 소독(일 1회 이상)

▶ 민원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마스크 착용 안내,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손이 자주 닿는 민원접수대, 무인민원발급기 등 소독(일 1회 이상)

2. 이용자 관리

□ 입장 관리

- 마스크 착용, 가급적 최소시간 머무르기 등 안내문을 게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5종)은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18세 이하 이용 금지
 - 접종완료자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이용자 간의 2m(최소 1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장 이용객 조절하는 등 밀도 조절*을 위한 노력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이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명단작성 및 코로나19 증상*유무 확인 의무시설**은 명단작성 거부 또는 열이
나는 이용객 등은 입장 제한
 -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 ** 전국 또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 시설이 상이한바 확인 필요(유흥업소, 동전 노래방 등)
- 입장시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및 기록*
 - * <서식 10> 수기출입명부 기록양식 예시
- ※ 수기출입명부는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및 관할 지자체 보고

❖ 수기출입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 할 경우, 방역지침 의무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 과태료(「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83조제2항)

□ 이용자 안전 관리

-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
 - 스티커로 간격표시, 대기줄 분리,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방안을 활용
- 물리적인 간격 확보가 어려운 경우, 투명 칸막이 설치, 이용객 수 제한, 이용객 간 시간 간격 유지 등
- 손 소독제를 비치 또는 화장실 외 영업장 내 세수대 설치하여 이용객이 자

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

- 이용객이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이용객의 입·퇴장, 이동이 분산되도록 유도

☐ 예방수칙 게시·안내

- 이용자 대상으로 예방수칙(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안내

3. 직원 관리

☐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즉시 검사하도록 조치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매일 직원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및 기록*
* <서식8> 직원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 예시

☐ 직원 보호 및 교육

- 직원들이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 이용자와 직원의 간격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유지
 - 환경에 따라 마스크 외 추가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추가 보호 방안 고려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接客 업무를 맡은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교육
- 행사나 회의 등은 취소·연기 또는 축소
 - 가능하면 화상·전화회의 등 비접촉 방식으로 변경,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연락처 작성, 증상 유무 확인
 - 손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식사시간에는 식사시간 분리, 좌석 간 간격 두기, 지그재그형 배열 등으로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

☐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 정보, 개인 위생수칙·행동요령, 사회적 거리 두기 교육

3

방역지침 준수 점검 단계

☐ 점검 실시

- 방역관리자는 사업장·시설 내 방역지침 준수 등 방역활동을 점검·평가
- 시설 책임자는 직원 등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방역관리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 실시

* 평가횟수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시설·사업장 등의 협의를 통해 결정

☐ 개선 필요사항은 조치하고, 책임자·방역관리자·직원은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간지지

Ⅲ 동호회 등 소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 동호회 등 소모임은 비대면·비접촉 모임 추진을 우선

- 불가피하게 대면모임(오프라인) 추진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모임 가능한 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1

모임 전

☐ 유증상자 참석 자제요청 등 방역수칙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모임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
-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손 씻기, 기침 예절, 소독, 사람간의 거리두기 등) 미리 숙지하도록 안내

☐ 모임 장소 선정

- 밀집·밀폐도가 낮은 야외 공간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선정
-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탁자·테이블이 배치된 장소 선택하고 이용하기

2 모임 중

☐ 모임규모 및 시간

- 모임은 가능한 소규모*로, 모임시간은 최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임 가능한 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모임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파악

☐ 개인방역 수칙 준수

- 탁자 간격 또는 사람 간 앞·뒤·좌·우로 2m(최소 1m)이상 거리 확보
- 모임시 마스크 착용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혼자, 다함께)노래하기, 응원하기, 음식물 섭취) 등은 자제
- 손씻기(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또는 손소독제 사용), 악수·포옹 등 신체 접촉 자제
 - 기침예절 준수 (기침·재채기 할 경우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코 가리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 창문열기가 어려운 경우 주기적 환기¹⁾(또는 환기되도록 요청)
 - * 에어컨의 풍량은 최소한으로 하되,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하기
- 모임시 필요한 소품(책 등)은 개인용품 사용하고, 공용사용은 자제

3 모임 후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

1) 관련 시설의 냉난방기 사용방법(환기) 관련하여 본서의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조

IV 방역관리자 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운영 안내

○ 교육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 구성원 및 방역관리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등

○ 교육내용

- (이론편) “어서와, 방역관리자 업무 교육은 처음이지?”
- (실천편)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결혼식장, 카페 모의훈련

○ 홈페이지 주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 <http://ncov.kohi.or.kr>

<수강신청 방법>

① 방역관리자 업무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신규 회원은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준회원은 핸드폰 번호(ID)로 가입
- *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존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② “방역” 또는 “업무” 등 관련 단어를 입력하여 과정 검색

③ “방역관리자 업무 교육(이론·실천편)” 과정을 수강신청

- * 차시별 학습 진도율이 100% 되어야 최종학습이 이수됨
- * 모든 학습완료 후 마이페이지-수료증출력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학습문의: 사이버교육 학습지원센터 1600-8810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 시청 (이수증 미발급)

* 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영상자료

서 식

서식 1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예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_____

작 성 자 : _____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밀집도)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이용자간 항상 2m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테이블간, 좌석간						
(지속도) 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정도는? (아래 항목에 V표시)	5개 이상		4개						
준수	미준수	방역 수칙 항목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게시·안내하였는가?							
		손소독제 비치 및 이용자 명부작성 하였는가?							
		직원과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였는가?							
		주기적인 환기(자연환기, 기계 환기)를 실시하였는가?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였는가?							
		(식당·카페)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중 한가지 이상 준수 하였는가?							
□ 개선 및 대안									
위험도 종합 평가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4점 이하), 중간(5~7점), 높음(8점 이상)

다만, 위험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밀폐도) 공간 내 환기는 가능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기계환기 ① 야외시설 이용(특히, 침방울 발생 행위시) 유도 및 우선배치 ② 상시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 문을 개방하여 상시 환기 ③ 상시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및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기계환기
(밀집도) 이용자 간 1~2m 거리 유지가 가능한가? (사람 간 거리 확보)	※ 시설 면적을 고려한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게시·안내 및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 ① 비대면 접수(무인 주문·계산기,), 대면 접수·계산 시 물리적 장벽(투명 칸막이 등) 설치 ② 테이블의 간격 2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③ 대기하는 줄, 흡연실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간에 2m 간격을 표시,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 ④ 바닥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⑤ 그 외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
(지속도) 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어떠한가? (이용자의 체류시간 최소화)	※ 이용 절차 안내문 부착(신속한 이용 유도) ① 사전 예약제 운영 ②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포장, 배달·포장 등 활용 ③ 시간대별 입·퇴장 제한하거나, 입장 후 1시간 알림 등
(활동도) 이용자·직원의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	※ 침방울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혼자, 함께)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응원, 춤추기, 격한 운동, 공용 그릇 사용 등의 식사 등)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① 음식물 섭취 제한(공연장, 영화관, 스포츠관람, pc방 등) ② 식사할 때 공용 그릇 사용하지 않고 개별 식기와 집기 사용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 정도는?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활동 (관리의 효율성 증대)	※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이용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방역 수칙 준수 및 시설 내 동시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 관리 ①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문 부착·착용안내 ② 출입구, 개별 방(실) 마다 동시 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③ 이용자 대면 시, 손소독제 제공 및 손소독 안내 * 예시 : (음식점) 메뉴판 제공시, 출입 시 손소독제 제공하여 손소독 권고, (택시)탑승자 탑승 시 손소독제 제공하여 손소독 권고 ④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이용자 출입 명부관리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등)	※ QR 코드 등 이용하여 정확한 이용자 출입명부 관리 ① 출입하는 이용자에 대해 QR 코드 등 이용하여 출입명부를 관리 ②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이므로, 방문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안내
직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튼 차단)	※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 코로나19는 침방울 튼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①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착용 독려
시설의 주기적 환기 (환기를 통한 공기 중 방울 농도 감소)	※ 시설의 주기적 환기 및 환기대장 관리 ① 가능한 경우 상시 자연환기 하고, 불가능한 경우 적어도 매일 3회(회당 10분) 이상 자연환기 ② 기계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연환기를 병행 ③ 냉난방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시간 마다 1회(10분) 이상으로 더욱 자주 자연환기 ④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
자주 손이 닿는 물체 표면 주기적 환경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주기적 소독 및 소독대장 관리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서식 3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는 방역관리 점검을 매일 실시 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설명 : _____
 방역관리자 : _____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창문 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냉장시설 가동 (ex.육류업체) 등)	
(밀집도) 직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사업장·흡연실·휴게실 등)	이용자간 항상 2m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좌석간 2m유지 또는 칸막이설치				좌석간 2m 유지 불가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10명 미만		1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일반 사무공간)		적극적 침방울 발생(여론조사 기관, 콜센터 등)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유증상자 확진자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있음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없음	
☐ 개선 및 참고 사항 						
위험도 종합 평가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 이상)

서식 4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예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_____

방역관리자 : _____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결과 (해당에 V표시)	
	예	아니오
① 직원 및 방문자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 (사업장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② 매일 직원(일용직포함)의 체온측정 및 증상여부 확인하고 있는가?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③ 근무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가?		
④ 직원 외 방문자의 출입명부 관리를 하는가?		
⑤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 가동을 하는가?		
⑦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해당사업장만) 보호용구(작업복, 안전모,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신발 등)를 개인별로 사용하거나 공용사용시 매 사용시마다 소독하는가?		
☐ 개선 및 참고 사항 		

서식 5

사업장 방역 관리 위험도 개선방법(예시)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공간면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주기적 환기를 위한 환기 담당자 지정 등 방법 활용
(밀집도) 직원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 간 거리 확보)	※ 직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 ① 책상, 작업대, 의자의 간격 2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불가능한 경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배치, 작업대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물리적 장벽(책상 칸막이 등) 활용 등 ③ 흡연실, 탈의실, 휴게 공간, 구내식당의 대기 줄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용 공간에서는 2m 간격을 표시 하고,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 ④ 회의·보고 전·후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⑤ 구내식당의 좌석은 2m 유지 가능하도록 배치 또는 칸막이 설치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한 공간 내 동시 근무 인원 최소화)	※ 직원 분산 등을 위해 근무 형태 안내 및 유도 ①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휴가제도 마련 및 활성화 ②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3분의1, 2분의1 등 사회적 거리 유지 가능한 비율) 근무(그 외 재택근무 등 활용) ③ 교대근무 시, 교대 조는 시간차를 두고 업무 공간 사용 ④ 사업장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	※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① 업무 공간 내 음식물 섭취 제한 ② 식사, 휴게 공간에서 개별용기 사용 및 음식 공유 자제 ③ 대면 접촉 감소를 위해 영상회의, 서면회의, 전화회의 등 활용, 불가피한 경우 참석인원 및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밀폐된 공간 내,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화 자제 등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 유도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사업장 내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하고, 맞춤형 방역지침 마련)	※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 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장·시설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②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수행
직원의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튼 차단)	- 코로나19는 침방울 튼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①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 (특히, 계속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직원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유증상자 관리를 통한 감염전파 차단)	※ 매일 직원·방문자 의 체온측정,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관리
근무중 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	※ 직원중 발열, 기침 등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직원(일용직 포함) 및 방문자 연락망 확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 일시적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및 방문자의 연락망 확보 ①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이므로, 방문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안내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 물품 매일 1회 이상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소독 및 방역 수칙 교육 및 안내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손 위생 시설 비치 (손 위생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손씻기 안내문 부착(출입문, 이용 공간 등) ① 사업장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안내문 부착하여 손 소독 유도 ②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해당사업장) 보호용구를 개별적 사용 또는 사용 전·후 소독 (보호용구를 통한 감염 전파 예방)	※ 개인보호용구 개별 사용 또는 공용사용시 사용 전·후 소독 철저 ① 개인방역수칙과 관련된 개인보호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안내문 부착, 안내 방송 등)

소독 실시 대장 양식²⁾(예시)

※ 동 기록양식은 예시로서, 시설등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 19 –

서식 7

환기 실시 대장 양식³⁾[예시]

연번	일시	시간	장소	비고	담당자 확인	관리자 확인
1	6.25	09:00	회의실 (창문출입문)	상시환기 (10분이상)		
		11:00				
2						

※ 동 기록양식은 예시로서, 시설등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3)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 3-4판)」참조

직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illegible]

1) 직원의 증상발생 여부 확인위해 체온측정

2) 코로나19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사업장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illegible]

※ 동 자가점검표는 예시로서, 시설등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1) 방문자의 증상발생 여부 확인위해 입장 시 체온 측정

2) 코로나19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모든 사업장 기본 공통수칙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준수

서식10

수기출입명부 기록양식(예시)

- * 신분증 대조 필수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별도 동의 필요)
- * 출입자 전원 작성 (○○○ 외 ○명 작성 불가)



연번	날짜	방문시간	개인정보수집 동의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부가시 휴대전화번호	비고
1	6.24	17:24	✓	관악구	12가 34나	
2						

※ 동 자가점검표는 예시로서, 시설등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 * 수기명부 비치 및 세부적 관리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수기명부 지침」 참조
- * <붙임 4> 개인안심번호 확인방법 안내 참조

서식 11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 방역 점검표(예시)

점검 내용 (√표로 체크)		확인
시설명 :		
방역 관리	시설 내 수용 가능인원 수를 게시하였는가,	√
	시설 위험도 평가 후 시설 별 맞춤형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방역수칙 교육 하였는가	√
기본 방역 수칙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하였는가	√
	코로나19 확진 시, 방역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하였는가	
	방역관리자는 '방역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실천,이론편)'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및 직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배치하였는가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에 한해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하였는가	
	예방수칙 홍보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 하였는가,	
	환기 대장 및 소독 대장을 배치 하였는가	
	동선이 많이 겹치는 장소별 손소독제 배치를 했는가	
	마스크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음식섭취 전 손위생 철저히, 음식 나눔 자제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장소에선 비말이 많이 발생 할수 있는 대화 및 음식 섭취 자제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밀접하지 않도록 다수가 식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식사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하였는가	
소독	소독 전 소독장비가 준비되어 있는가, 환경부에서 승인된 소독제품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소독 후 소독 대장 기록하였는가	
	일 1회 이상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는가	
거리 두기	한 좌석 띄워 앉는 등 다른 사람과 좌석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좌석은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하고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 마주 볼 경우 가림막(칸막이) 설치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하도록 안내 하였는가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에서는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가 증가 되어야 함을 안내하였는가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환기하도록 안내하였는가(맞통풍)	
	조식중식·석식 등 배식 시간 전후 환기필요(환기시간 게시 권고)하다고 권고하였는가	

※ 동 자가점검표는 예시로서, 시설등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서식12

활동 별 방역관리자 방역 점검표(예시)_여행, 모임 등

점검 내용 (V표로 체크)		확인
1. 계획할 때		
계획 단계	참가자의 명단을 확보하였는가	√
	방역관리 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자에게 안내하였는가	
	일정은 1일 이내로 최소화하였는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안내하였는가	
2. 이동할 때		
공통	모임 시, 발열 및 호흡기증상여부 확인(체온측정 등) 및 증상시 알리도록 안내하였는가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는가	√
	마스크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였는가	
교통수단 내부	탑승 전 충분한 시간동안 차량 내부를 환기하고, 정차 및 이동 시 환기하도록 안내하였는가	√
	한좌석 띄워 앉는 등 다른 사람과 좌석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차량 내부에서 노래음주대화 및 음식 섭취 자제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3. 실외활동을 할 때		
공통	모임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체온측정 등) 및 증상시 알리도록 안내하였는가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는가	
	마스크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였는가	
활동 중	음식섭취 전 손위생하고 개별 섭취, 나눔 자제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침방울이 될 수 있는 함성, 노래, 큰소리로 대화 등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였는가	
활동 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는 방문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안내하였는가	
4. 식사를 할 때		
식사안내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개별적으로 식사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식당 내	불가피하게 단체 식사 시, 혼잡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으로 식당을 예약하였는가	
	식당 내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먹거나 마시는 시간은 제외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은 개별적으로 덜어먹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을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좌석은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하고 가위를 유지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대화, 함성, 노래 등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식사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는 방문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안내하였는가	
5. 귀가 후		
귀가 시 안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하고 외출·모임 자제하도록 안내하였는가	
	* 귀가 후 38도 이상 고열 지속등 증상발생시 즉시검사받기	
	코로나19 확진 시, 방역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하였는가	

※ 동 자가점검표는 예시로서, 모임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제 목

Q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종교모임 같은 소모임을 할 때에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 시설·사업장 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모임에도 방역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Q2. 방역관리자는 누구를 지정하나요? 사업장·시설 책임자(사업주, 모임의 장 등)가 방역관리자가 되어야 하나요?

- 방역관리자는 구성원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구성원은 시설·사업장·동호회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Q3. 위험도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처벌이나 규제를 받게 되나요?

- 위험도 평가점수가 높다고 처벌이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위험도 평가는 시설·사업장 스스로 자가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방역 관리 상태(밀폐, 밀집, 방역 수칙 준수 정도 등)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Q4. 위험도 평가는 언제 진행 하는 것이 좋은가요?

- 위험도 자가 평가는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주기 등을 결정하여 수행하면 됩니다.

- 다만, 단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를 수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Q5.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위험도 평가를 해야 하나요?

- 위험도 평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가장 혼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시간을 기준으로 관리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적극적 방역관리 수행을 통하여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6. 자연환기가 불가 한 경우 공기 청정기로 대체 할 수 있나요?

- 공기청정기와 관계없이 주기적 환기(하루 3회 이상)를 권합니다.
- 환기를 통해 코로나 19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7. 시설 소독 시 어떤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나요?

-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 된 소독제를 사용하며,
 - 소독제 사용 전에는 반드시 소독제 라벨에 쓰여 있는 용량과 용법 등 권장사항을 읽고, 사용 시 준수해야 합니다.

Q8. 확진자가 시설을 이용 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확진자가 시설 이용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을 파악하고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방역당국의 지

시에 따라 소독 등의 조치를 이행합니다.

Q9. 이용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방역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알고 최대한 협조하도록 안내문 게시 및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합니다.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관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용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Q10. 방역지침만 제대로 이행하면 안전한가요?

- 코로나19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나, 책임자·종사자(직원)·이용자·모임 구성원 등 모두의 방역지침을 준수 노력을 통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3.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 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
4.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5.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6.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7.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세탁한다.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9.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10.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15.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즉시 받도록 안내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붙임 3

예방접종이력 확인방법

-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소 업무담당자 및 자택으로 이동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전자증명서(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 예방접종완료자 외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 방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참고

① 전자 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플랫폼)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QR 스캔 또는 육안 확인
 - (QR 스캔)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스캔으로 유효한 접종증명 확인
 -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육안확인)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접종증명 정보를 육안으로 점검하여 유효한 접종 증명서*임을 확인
 - * 전자 증명서내에서 “접종완료”, “14일경과” 등 주요 내용 확인 필요

<전자 증명서(COOV) 예시>



②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접종 유효기간 육안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증명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접종 유효기간 : 예방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유효기간 계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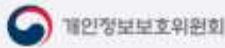
- '21.10.1. 10:00에 접종한 경우, '21.10.16. 0시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준용

③ 예방접종 스티커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접종 유효기간 육안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스티커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앞면의 신분증 일치 여부
 - 접종 유효기간 : 예방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예방접종 스티커 예시>

1차접종 21.00.00	홍길동	제0000000000000000호 질병관리청
접종완료 21.00.00	홍길동	제0000000000000000호 질병관리청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발 급



①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

이 용

방문일차	방문시간	개인명부 수일 종료	사·공·주·기·주·사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2. 19.	14:15	✓	종로구	12가34나

②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기재!

• 휴대전화번호도 기재 가능

2021.04.30

질병관리청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방역관리자편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흐르는 물에
자주 손 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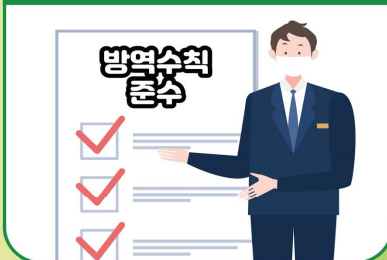
공용물품 자제하고
환기,소독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기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하고
방역수칙 안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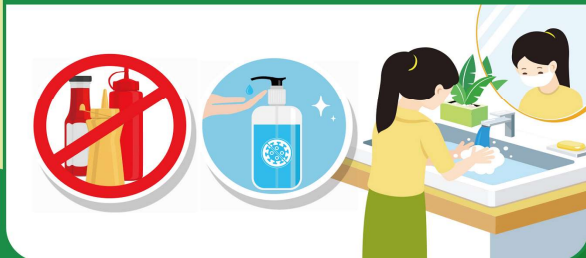
출입자 증상 확인 및
명부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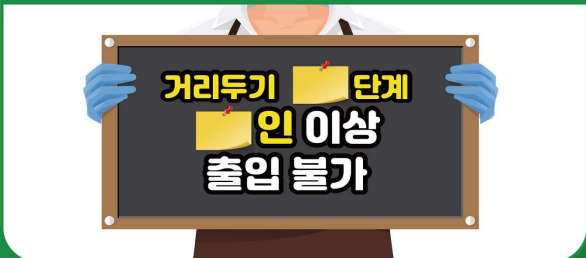
하루 3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 소독하기



공용물품 제공하지 않고,
손 씻을 공간·손소독제 마련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맞춰
이용인원 관리하기



코로나19 의심증상 관련 문의는
가까운 보건소나 ☎1339로 전화주세요